##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527 제출연월일 : 2025. 5. 15.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 제목 "(보고와 검사 등)"을 "(서류 제출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제97조의3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96조제6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69조제1항제2호·제3호"로, "보고 ·공표·검사"를 "검사·공표"로 한다.

제97조의3을 제97조의4로 하고, 제9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과태료) ① 제69조제1항제1호(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편 행	개 정 안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	제69조(서류 제출과 검사 등) ①-		
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u>포함한다)</u> , 시·도	<u>포함한다. 이하 제97</u>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i		
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69조제1항</u> (제44조의6제1항	6. <u>제69조제1항제2호·제3호</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72조제3항·제4항, 제73			
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u>보고・공표・검사</u> ・개수・변	<u>검사·공표</u>		
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97조의3(과태료) ① 제69조제1		

항제1호(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런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다.

<u>제97조의4</u> (현행 제97조의3과 같음)

제97조의3 (생략)